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4. 6. 12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381
----------	-----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30. 강남구청장(문화도시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(2024. 6. 12.)  
“수정가결”

### 2. 제안설명 요지(미래문화국장 : 문경수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도서관의 일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 협동조합 도서 우선 구매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지역서점 활성화와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‘지역서점’ 으로 한정된 도서 우선 구매 대상에 ‘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’ 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6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7조의2(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)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: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4. 4. 19. ~ 2024. 5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: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: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(분석평가 완료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- 강남구는 도서관, 자료실 등의 도서구매 계약을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체결하였음. 경쟁입찰은 계약규모, 품목, 단가 등 여러 조건상 지역서점과 같은 영세업체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, 이들 지역서점이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자로 선정되기에는 어려운 구조임.
- 강남구의 도서구매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체결되어 왔으며, 도서구매 계약 상대방으로 지역서점이 선정된 경우는 없었음. 집행부는 2022년까지 강남구가 도서구매 계약을 지역서점과 체결한 선례가 없었던 주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.

#### <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구매 계약 시 제한 사유>

<p><b>1. 공개경쟁입찰만 가능</b> - 「지방계약법」 제9조,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일반입찰(공개경쟁입찰) 방식만 가능함.</p> <p><b>2. 분할계약 금지</b> -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77조에서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분기별로 각 지역서점과 개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함.</p>
---

자료: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서관과 도서관운영팀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·제3항·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제 때문에 각 지역서점과는 도서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임.
- 도서정가제 시행,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 문화거점 역할을 맡아온 지역서점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

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.

-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22년 2월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이 개정되면서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강남구도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2022년 12월 제정 및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여전히 지역서점들이 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서점 점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.
- 한편, 최근 4개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2024년 5월 기준 강남구는 연평균 67,500권의 도서를 자산취득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연평균 구입금액은 9억 7,653만원이었으며, 그 중 지역서점을 통하여 구입한 도서의 연평균 수량은 873권(1.6%)였고 지역서점을 통하여 구입한 도서의 연평균 구입금액은 1,554만원(1.9%)이었음.
- 또한 2022년 조례 제정 당시 42개소로 집계되었던 지역서점 수는 2024년 5월 현재 23개소로 확인됨. 이와 같은 지역서점 수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서점 운영의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으로 보여짐.
- 이에 강남구 문화도시과 도서관운영팀은 2023년 지역서점 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을 논의되었고 그 대안으로 강남구에 2023년 7월 지역서점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음.
- 다만, 지역서점 협동조합이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, 2023년에는 위탁기관에 교부한 예산 중 일부인 3천만원 정도의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서점 협동조합을 통하여 도서를 구매하였고, 구매한 도서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립작은도서관에 배부하였음.
- 한편, 강남구와 지역서점 점주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지역서점 협동조합과 도서구매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.
- 강남구는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구매 계약의 당사자를 지역서점 뿐만 아니라 지역서점 및 그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강남구 예산과 국·시·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도서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

록 하려는 것임.

- 또한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7조의2제4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목적으로 하는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. 이 규정은 지원의 규정이지 도서 우선 구매의 근거는 아닌 바 ‘지역서점’ 을 ‘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’ 까지 우선 구매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. 다만, 제6조의 제목을 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)을 (지역서점 등 우선 구매)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.
-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을 담는 그릇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지만 법령에 막혀 지역서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바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입법 취지를 잘 살려서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도서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짐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**

**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**

**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**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.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## 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
제381호

제안일자 : 2024.6.12.

제안자 : 행정재경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에 반영된 도서 우선 구매 대상을 포괄하여 규정하고자 제목을 수정

### 2. 수정주요내용

- 제목 수정 (안제6조)

강남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의 제목 중 “도서”를 “등 도서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) 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<u>지역서점</u>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) ① ----- -----<u>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</u>-----</p> <p>-. 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6조(지역서점 등 도서 우선 구매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)”를 “(지역서점 등 도서 우선 구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역서점”을 “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)</p> <p>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<u>지역서점</u>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지역서점 등 도서 우선 구매) ① -----            -- <u>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</u>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도서관의 일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 협동조합 도서 우선 구매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치 않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

### 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### 4. 작성자

문화도시과 행정7급 방주영(02-3423-5952)